

의안번호	제 42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5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2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행정절차법」 제42조 개정(시행 2020. 6. 11.)에 따라 입법예고 방법 관련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예외 등 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예고 예외 사유 개정(안 제4조)
-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방법 변경 및 자구수정 등 (안 제6조)
 - 입법예고 방법 : 도보 또는 인터넷 → 도보 및 인터넷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제1항 중 “도보 또는 인터넷”을 “도보 및 인터넷”으로, “방법에 의한다”를 “방법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통지할 수 있다”를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입법예고) (생략)</p> <p>1. <u>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 하는 경우</u></p> <p>2. <u>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p> <p>3.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제4조(입법예고) (현행과 같음)</p> <p>1. <u>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p> <p>2. <u>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p> <p>3. <u>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p> <p>4. <u>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제6조(예고방법) ① <u>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u></p> <p>② (생략)</p> <p>③ <u>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u></p>	<p>제6조(예고방법) ① ----- ----- <u>도보 및 인터넷</u>----- ----- <u>방법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통지하거나 그</u> <u>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췌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6.

11. 시행>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공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및 그 처리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